

3. 무역협정 - 한·EU FTA

□ 농산물 양허

1.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한/EU FTA				한/미 FTA			
	한국양허		EU양허		한국양허		미국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42.1	19.5	91.8	88.3	37.8	55.3	58.7	8.2
2-3년	1.2	17.9	0.5	0.9	2.5	0.2	0.6	0.1
3년내	43.3	37.4	92.3	89.2	40.3	55.5	59.3	82.1
5년	19.2	27.9	5.8	10.3	22.0	11.9	22.1	2.0
5년내	62.5	65.3	98.1	99.5	62.3	67.4	81.4	84.2
6-7년	3.3	4.1	-	-	2.9	4.1	5.1	13.8
10년	19.9	21.9	-	-	22.5	4.7	9.9	2.0
10년초과	11.5	8.5	-	-	10.2	15.7	3.6	0.0
양허제외 현행관세	2.8	0.2	1.9	0.5	2.0	8.1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	-------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2013. 1. 17)

2.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 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 세번분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4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1년간 세이프가드)

- 배: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10년, 냉동 기타 부위: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낙농제품: 양허 기간 장기화

- 전·탈지 분유: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3.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 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
년내 완전 철폐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EU측 품목 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킷(복합세) 등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 수 기준 1.9%, 대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 수산물 양허

1.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한/EU FTA				한/미 FTA			
	한국양허		EU양허		한국양허		미국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12.3	6.8	40.8	25.3	14.2	1.5	72.8	82.5
2-3년	31.9	20.3	31.8	69.7	40.7	37.4	7.2	5.1
3년내	44.2	27.1	72.6	95.0	54.9	38.9	80.0	87.5
5년	23.0	50.9	27.4	5.0	7.6	25.9	3.6	0.1
5년내	67.2	78.0	100.0	100.0	62.5	64.8	83.6	87.7
6-7년	4.4	0.2	-	-	0.2	0.0	-	-
10년	27.2	6.2	-	-	36.3	30.2	16.4	12.3
10년초과	0.5	15.4	-	-	1.0	5.0	-	-
양허제외 현행관세	0.7	0.2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조사일: 2013년 1월 17일

2.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10년 철폐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 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3.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 수 기준 72.6%, 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 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 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양허

< 식량 작물 >

품목	양허 내용
쌀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대두	콩나물용 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채유 및 박용은 5년 철폐 - 콩나물용(487%): 현행관세 유지 - 채유 및 박용(487%): 5년 철폐
감자	신선 및 냉장 감자의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종자용 감자는 10년철폐, 냉동 감자는 5년 철폐 - 신선 및 냉장(304%): 현행관세 유지 - 종자용(27%): 10년 철폐 - 냉동(27%): 5년 철폐
보리	겉보리 및 쌀보리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맥주맥 및 맥아는 15년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및 쌀보리(299.7%): 현행관세유지 - 맥아(269%)+맥주맥(513%):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 쿼타 제공 10,000톤(1년차) ~ 17,164톤(15년차)
옥수수	식용과 종자용을 구분 철폐 - 팝콘용(630%): 13년 철폐 - 종자용(328%): 5년 철폐
전분	15년 또는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감자전분(455%):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 옥수수전분(226%),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1.2%) : 15년 철폐 - 변성전분(385.7%): 12년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28,000톤(1년차) ~ 44,337톤(12년차)
기타	15년 철폐 - 녹두(607.5%), 팥(420.8%), 메밀(256.1%), 대추(611.5%), 밤(219.4%), 잣(566.8%), 발효주정(270%), 타피오카(887.4%)

< 육 류 >

품목	양허 내용
쇠고기	◦민감한 6개 세번(40%):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9,900톤(1년차) → 13,062톤(16년차, 매년 2%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1 ~ 6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7 ~ 11년차) 실행세율의 75% → (12 ~ 16년차) 실행세율의 60%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15년 철폐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25%): 10년 철폐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갈비·목살 등)(22.5%): 10년 철폐, 11년간 세이프가드 적용 ◦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 5년 철폐

	*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갈비.목살(25%) *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22.5%) ◦냉동 족(18%), 돼지고기 밀폐가공품(30%): 6년 ◦식용설육(18 ~ 30%), 소시지(30%),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27 ~ 30%): 5년 철폐
닭고기	◦민감한 2개 세번: 13년 철폐 * 냉동 가슴살 및 날개(20%) ◦냉장육(18%), 냉동(다리)(20 ~ 22.5%): 10년 철폐 ◦삼계탕(30%): 10년 철폐
계란	◦계란(41.6%), 전란액(27%): 15년 철폐 ◦난황(27%): 13년 철폐 ◦종란(27%): 10년 철폐
기타육류	◦오리고기(18 ~ 22.5%):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3년 철폐 ◦산양·면양고기(22.5%): 10년 철폐 ◦칠면조고기(18%): 7년 철폐 ◦녹용·녹각(20%): 15년 철폐

< 낙농품, 꿀, 사료 >

품목	양허 내용
연유 발효유	◦ 탈지분유·전지분유(176%)·연유(89%):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1천톤(매년 3% 증량) ◦ 혼합분유(36%): 10년 철폐 ◦ 조제분유(36 ~ 40%):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제공 450톤(매년 3% 증량) ◦ 발효유(36%): 10년 철폐
치즈 (36%)	◦체다치즈: 10년 철폐 ◦체다 이외의 치즈: 15년 철폐 ◦치즈 무관세쿼타 제공 4,560톤(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10 ~ 15년 철폐 - 지방함량 6% 이하: 15년 철폐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13년 철폐 - 냉동크림: 10년 철폐
버터 (89%)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50톤(매년 3% 증량)
유장 (49.5%)	◦ 식용: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3,35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즉시 철폐
꿀	◦천연꿀(243%):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50톤(매년 3% 증량) ◦인조꿀(243%), 로알제리(8%), 벌꿀조제품(8%): 10년 철폐
사료품목	◦ 사료용 근채류(100.5%): 15년 철폐 ◦ 보조사료(50.6%):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5,500톤(매년 3% 증량) ◦ 사료용 옥수수(328%): 5년 철폐

< 과일, 과채류 >

품목	양허 내용
감귤류	◦감귤(온주밀감): 현행관세(144%) 유지

(144%)	◦앤더린, 클레멘타인: 15년 철폐
오렌지 (50%)	◦감귤 성출하기(9~2월): 현행관세(50%) 유지 - 무관세쿼타 제공: 20톤(1년차) → 60톤(11년차) (이후 고정) ◦감귤 비출하기(3~8월):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철폐
사과(45%)	◦후지 계통 품종: 20년 철폐, 세이프가드 24년 적용 ◦기타 품종: 10년 철폐, 세이프가드 11년 적용
배(45%)	◦동양배 품종: 20년 철폐 ◦기타 품종: 10년 철폐
포도(45%)	◦성출하기(5월~10.15): 17년 철폐 ◦비출하기(10.16~4월):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키위(45%)	◦ 15년 철폐
복숭아, 단감 (45%)	◦ 10년 철폐
딸기	◦ 신선(45%): 10~12년 철폐 * 초본류 딸기 : 10년 철폐, 나무딸기 : 12년 철폐 ◦ 저장(30~45%): 즉시~7년 철폐 * 일시저장처리: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 7년 철폐 ◦ 냉동(30%): 5년 철폐
토마토	◦신선 및 냉장(45%) : 7년 철폐 ◦토마토 주스(30%), 소스 : 5년 철폐 ◦토마토 케첩(8%), 페이스트(5%) : 즉시 철폐
오이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일시저장처리(30%) : 10년 철폐
호박	◦ 신선 및 냉장(27%) : 즉시 철폐 ◦ 건조(30%) : 10년 철폐
가지(27%)	◦즉시 철폐
수박(45%)	◦12년 철폐
멜론(참외 포함) (45%)	◦12년 철폐 (껍질은 즉시 철폐)

< 양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	양허 내용
고추	◦핵심 4개 세번(270%):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냉동고추(27%): 15년 철폐
마늘	◦핵심 4개 세번(360%): 현행관세 유지 - 신선 및 냉장 마늘. 일시저장처리 마늘. 건조마늘 ◦냉동마늘(27%) : 15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마늘(30%): 10년 철폐
양파	◦신선 및 건조 양파(135%): 현행관세 유지 ◦냉동양파(27%) : 12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양파(30%): 5년 철폐
생강	◦ 신선 생강(377.3%): 18년 철폐 ◦ 설탕저장처리 생강(30%): 5년 철폐
파	◦건조 파(30%): 7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쪽파(30%): 5년 철폐 ◦쪽파. 기타파속채소(27%): 즉시 철폐

인삼	◦핵심 7개 품목(222.8 ~ 754.3%): 현행관세 유지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상류(본삼, 미삼, 잡삼) ◦홍삼가공품 6개 품목(754.3%):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9년간 적용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타블렛 및 캡슐 등 ◦인삼가공품 2개 품목(20%): 13년 철폐 - 인삼엑스, 인삼엑스분 등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 10년 철폐 - 인삼차, 홍삼차 등
땅콩	◦땅콩(230.5%): 18년 철폐 ◦땅콩 조제품(50 ~ 63.9%): 10년 철폐
참깨 참기름	◦참깨(630%): 18년 철폐 ◦참기름(630%): 18년 철폐

< 엽근채류 >

품목	양허 내용
당근(30%)	◦5년 철폐 (건조는 7년, 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 (27%)	◦5년 철폐 (케일 등은 즉시)
양배추 (27 ~ 30%)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채소	◦채소쥬스: 5년 철폐 ◦채소류 혼합물: 즉시 철폐 ◦냉동·일시저장처리: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5년 철폐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기타	◦토란줄기(건조) 10년 철폐, 고구마줄기(건조) 7년, 칩줄기 및 뿌리 5년, 연뿌리(설탕저장처리) 5년

< 가공식품 >

품목	양허 내용
설탕	◦향미 또는 착색제가 가미된 것: 현행관세 유지 ◦기타: 16년 철폐, 세이프가드 21년간 적용
대두유 옥수수유	◦대두유: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옥수수유: 5년 철폐
장류	◦된장, 춘장(8%): 10년 철폐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 청국장): 5년 철폐
소스류	◦혼합조미료(45%): 15년 철폐 ◦인스턴트 카레(45%): 5년 철폐 ◦마요네즈(8%): 10년 철폐 ◦겨자(8%): 즉시 철폐

빵류, 기타식품류	◦식빵, 건빵 등 빵류: 5년 철폐 ◦커피(생두), 홍차, 라면, 파스타, 아몬드 등: 즉시 철폐
주류	◦포도주(15%): 즉시 철폐 ◦맥주(30%): 7년 철폐 ◦스카치, 버본, 아이리쉬 위스키(20%): 3년 철폐 ◦데킬라, 보드카, 브랜디(20%): 5년 철폐

■ EU의 FTA 정책

○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음. 개별 국가와의 양자간 협정보다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중점을 둠.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 국가와의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음.

○ EU는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 국가와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경제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원래의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EU FTA의 주요 특징

○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 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음.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적인 모델은 없음

며 FTA마다 내용도 매우 다양함.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음.

○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 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 한국과는 2010년 10월 6일 공식 서명하였음.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향후 2016년까지 EU 집행위의 무역정책 내에서 인도와 MERCOSUR, 싱가포르, 캐나다와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한-EU FTA는 2010년 10월 6일,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공식 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담 상임의장,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간에 정식 서명되었음.

○ EU와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돼 2009년 7월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2009년 10월 15일에 가 서명 된 바 있음.

○ 한-EU FTA는 당초 2011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6개월 연기돼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어 정식발효와 거의 차이가 없음. 정식발효는 27개 EU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상 2-3년이 소요됨.

○ EU는 한-EU FTA에 대해 가장 야심 찬 무역협정이자 아시아 국가와의 첫 번째 FTA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음.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통해 양측 간 교역 증진, 유럽의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뿐만 아니라 한-EU FTA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이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음.

■ FTA를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

○ EU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 및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됨

○ 한국 경제의 효율성 증대 기대. 즉, 선진국과의 경쟁 압력에 노출되어 기업들의 생산성 및 국제 경쟁력 증진 효과 가능

■ FTA 추진동향

○ 한-EU FTA는 당초 2011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6개월 연기돼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2011. 07	한 - EU FTA 잠정 발효
2010. 10	한 - EU FTA 정식서명
2009. 10	한 - EU FTA 가성명
2009. 03	제8차 FTA 협상 개최
2008. 05	제7차 FTA 협상 개최
2008. 01	제6차 FTA 협상 개최
2007. 07	제2차 FTA 협상 개최
2007. 05	제1차 FTA 협상 개최
2007. 05	한 - 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06. 09	2차 예비협약 개최
2006. 07	1차 예비협약 개최
2006. 05	한 - EU 통상장관회담 개최, 한 - EU FTA 예비협약 개최 합의
2003. 08	대한민국은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에 포함

*자료 조사일: 2013년 1월 17일

- 농산물의 경우,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및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함

< 한-EU FTA 농업부문 수입영향 분석 선정 품목 >

단위: 억원

구분	품목	양허 관세율 (%)	국내 생산액 (04-06 평균)	대 EU 수입액 (04-06 평균)	양허안
곡물	감자 전분	455	2,303 (0.6%)	221 (99.2%)	15년 철폐
축산	돼지고기	25	36,782 (10.1%)	2,893 (50.9%)	냉동 및 냉장 삼겹살 10년, 기타 5년 철폐
	닭고기	20	11,302 (3.1%)	333 (43.1%)	13년 철폐
	낙농품	36	15,293 (4.2%)	832 (27.5%)	현행관세 유지, TRQ, 10년, 15년 철폐 등
과일 과채	포도 (가공주스)	45	6,060 (1.7%)	88 (39.1%)	즉시 철폐
	키위(신선)	45	320 (0.1%)	0 (0.0%)	15년 철폐
	토마토	45	614 (1.7%)	49 (16.4%)	7년 철폐

* 감자 전분 국내 생산액: 신선 감자 생산액 및 국내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감자 전분의 대 EU 수입액: 전체 수입액에서 EU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 포도 국내 생산액: 신선 포도 생산액임

출처: 외교통상부 (2013. 1. 17)

< 한-EU FTA에 따른 대 EU 수출증가 효과 추정 결과 >

품목	관세 (%)	수출액(천 달러)			수입 수요 탄성치	가격 변화율 (%)	수출 변화율 (%)	수출증가액 (천 달러)		
		최고치	전체 평균	최근 평균				최고치	전체 평균	최근 평균
사과	20.2	389	181	87	-0.88	-16.8	14.8	57.6	26.8	12.9
배	10.4	1,406	413	994	-3.45	-9.4	32.5	456.4	134.2	322.6
기타조제 채소	17.6	683	407	542	-0.25	-15.0	3.7	25.4	15.1	20.1
비알콜 음료	9.6	611	295	461	-0.19	-8.8	1.6	10.1	4.9	7.6
커피 추출물	9.0	4,367	1,287	1,353	-0.38	-8.3	3.2	138.0	40.7	42.7
간장	7.7	417	243	283	-0.38	-7.1	2.7	11.3	6.6	7.7
곡물 조제 식료품	18.0	2,142	453	459	-1.70	-15.3	26.0	557.7	118.0	119.4

조제식료품 기타	12.8	11,411	6,821	11,187	-0.14	-11.3	1.6	182.5	109.1	179.0
마카 로니	26.9	1,572	624	1,201	-2.18	-21.2	46.4	728.9	289.3	556.7
담배 (비조제)	26.8	50,219	8,054	5,898	-4.50	-21.1	95.2	47,785	7,663.3	5,611.8
권련	10.0	2,057	843	489	-1.60	-9.1	14.6	299.6	122.7	71.3
조주정	0	1,407	493	544	0.00	0.0	0.0	0	0	0
면웨이스트	0	4,571	2,693	2,308	-0.23	0.0	0.0	0	0	0
페이스트리	18.0	1,239	659	745	-1.92	-15.3	29.3	362.4	192.7	218.0
설탕과자류	18.0	8,069	2,881	1,815	-0.58	-15.3	8.8	713.6	254.8	160.5
합계		90,560	26,347	28,366				51,328	8,978	7,330

* 수출액 전체평균은 1991~2005년, 최근 평균은 2003~2005년 평균임.

* 곡물조제식료품, 마카로니, 담배, 페이스트리, 설탕과자류의 혼합세는 종가세로 환산

출처: 외교통상부 (2013. 1. 17)